

되어 있습니다. 또한 同法 施行令 第19條에 의하여도 法 및 이 습에 規定한 外에는 監査 또는 調査에 이 條例의 改正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을 運營委員會에서 與野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條例에 議員 여러분께서 滿場一致로 議決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○議長 金瓏會 林東奎委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으셨습니다. 그러면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議員 여러분! 異議없으십니까?

(「異議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

異議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照)

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(案)

'91年 8月 8日

運營委員長提出

1. 提案經緯

(1) 運營委員會 孫允準 議員등 10인이 成案하고, 同 10인의 議員이 書面動議로 提出한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(案)를,

(2) 第49回 서울特別市議會(臨時會) 第1次 運營委員會('91.8.8)에서 審査한 結果 이 를 當 委員會(案)으로 採擇하고 本會議에 提案하는 것임.

2. 提案理由

(1)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第19條의2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議會가 실시하는 行政事務監査와 調査에 관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하는것임.

3. 主要骨子

(1) 範圍 : 地方自治法 第9條에 의하여 處理하는 業務

(2) 場所 : 議會 또는 피감사, 調査機關

(3) 活動 : 公務員 服務規定 第9條에 의한 勤務時間中

(4) 資料募集要求 : 議員은 議長의 許可를 받아 監査·調査期間 外에도 事務局長에게 資料蒐集을 의뢰할 수 있음.

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 ① 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.

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영 제17조의2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조(감사·조사의 장소) 감사와 조사의 활동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.

제4조(감사·조사 활동) 감사·조사의 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감사·조사에 대한 책임)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의원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한 때에는 의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.

제6조(사무보조)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·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(이하“사무보조직원”이라 한다)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

할 수 있다.

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.

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

① 의회의원은 감사·조사 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.

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제6조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규정)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,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의회위원회조례”와 “의회의회의규칙”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5. 서울特別市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

(14時 20分)

○議長 金璫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 地方別定職 公務員 人事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內務委員會 鞠應好委員長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內務委員會委員長 鞠應好 안녕하십니까? 內務委員長 鞠應好입니다.

서울特別市長이 提案한 서울特別市 地方別定職 公務員 人事管理條例中 改正案에 대한 內務委員會의 審査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.

이 改正條例案은 서울特別市立體育管理事業所

長과 東大門運營官의 定員이 서울特別市立體育管理事業所 設置條例 第4條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 定員規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職 또는 別定職으로 任用하도록 되어 있어 別定職 채용시에 임용자격 기준을 定하고 또 하나는 市議會 事務局에서 근무할 專門委員의 定員은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設置條例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職 또는 別定職으로 임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別定職 채용시의 임용자격 기준을 定해 주십사하는 內容이었습니다.

그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3級상당 地方別定職의 서울特別市立體育管理事業所長의 임용자격 기준은 4年制 大學卒業의 學歷所持有者로서 行政經歷 15年 이상 또는 체육에 관한 行政研究 指導分野 經歷이 7年 이상인 자, 4級이상 公務員으로서 公務員 在職 經歷이 15年 이상인 자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기준에 準한다고 認정한 자료 하고 4級상당 地方別定職의 東大門運營官 任用資格 기준은 4年制 大學卒業 學歷所持有者로서 行政經歷이 10年 이상인 자 또는 體育에 관한 行政研究 指導分野 경력이 7年 이상인 자, 5級이상 公務員으로 行政經歷이 10年 이상인 자. 기타 任用權者가 위 자격에 準한다고 認정한 자료 하고 4級상당 地方別定職의 市議會 專門委員 임용자격 기준은 4年制 大學졸업자로서 相關분야 경력이 5年 이상인 자, 5級이상 公務員으로서 行政經歷이 10年 이상인 자,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準한다고 認정한 相關분야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입니다.

이 改正條例案을 받아 가지고 당 內務委員會에서 1991年 8月 7日 第1次 內務委員會 會議에 上程하여 서울特別市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을 代리한 市議會 事務局 관계官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過程을 충분히 거쳤으며 91年 8月 8日 第2次 內務委員會 會議에서 繼續 질의답변을 한 후에 進지한 토론을 거쳐 審査한 결과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滿場一致로 議決을 보아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.